

제 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 2 차 본 회 의
2022.12.23.(금) 15:0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순서

①	심사대상 및 경과	2
	가. 심사대상	2
	나. 심사경과	2
②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3
	가.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3
	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	3
	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3
③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	4
	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4
	나. 일반회계 세입 총괄 현황	4
	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	5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	6
④	주요 검토사항	7
	가. 명시이월 예산 현황	7
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23일(금)
제2차 본회의

① 심사대상 및 경과

가. 심사대상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나.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2월 7일, 화성시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외 4개 위원회 - 2022년 12월 20일(화)~21일(화), 2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22년 12월 21일(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과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2. 12. 22.)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 각 부서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②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

①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45조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 중앙부처와 경기도로부터 최종변경 및 신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 주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올 한해 재정운용을 내실 있게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③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

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3조 7,640억 원보다 572억 원이 증가한 3조 8,212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표-1. 총괄표〉

(단위:억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조 8,212	3조 7,640	572	1.5%
일반회계	3조 2,696	3조 2,189	507	1.5
특별회계	5,516	5,451	65	1.1

나. 일반회계 세입 총괄 현황

-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00억 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130억 원, 보전수입은 국도비 반환금 등 48억 원 증액 편성
- 국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누리과정 운영지원 등에 262억 원 증액 편성,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감액변경내시액 221억 원 감액 편성 등 포함하여 의존재원 129억 원 증액 편성

〈표-2.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단위:억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조 2,696	3조 2,189	507	1.5%
지방세 수입	1조 5,128	1조 4,928	200	1.3
세 외 수 입	2,009	1,879	130	6.9
경상적세외수입	1,011	950	61	6.4
임시적세외수입	837	771	66	8.5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60	158	2	1.3
지방교부세	397	376	21	5.8
조정교부금등	2,368	2,523	△155	△6.1
보조금	9,818	9,555	263	2.7
국고보조금	7,443	7,307	136	1.8
시·도비보조금	2,374	2,248	126	5.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974	2,926	48	1.6

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

○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안은

- ▶ (자체사업) 기관운영 인건비 339억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55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23억 원 등 519억 원 증액 편성
- ▶ (보조사업) 공익직접지불금 18억 원, 영유아 보육료 16억 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분 11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초연금 지원 83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48억 원 등 440억 원 증액 편성

〈표-3. 일반회계 세출총괄표(기능별)〉

(단위:억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조 2,696	3조 2,189	507	1.5%
일반공공행정	2,881	2,745	136	4.9
공공질서및안전	485	468	17	3.7
교육	494	497	△3	△0.6
문화및관광	1,876	1,853	23	1.2
환경	2,370	2,350	20	0.8
사회복지	1조 425	1조 244	181	1.7
보건	844	834	10	1.1
농림해양수산	3,349	3,351	△2	△0.0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95	1,063	32	3
교통및물류	5,089	4,968	121	2.4
국토및지역개발	1,046	1,034	12	1.1
예비비	240	249	△9	△3.6
기타	2497	2527	△30	△1.1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

-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투자 유보금 477억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500억 원 증액 편성
 -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117억 원 감액, 하수도 시설투자비 등에 92억 원 증액 편성
- 기타특별회계에서 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48억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8억 원 등 67억원 증액 편성

4 주요 검토사항

가. 명시이월 예산 현황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부득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가급적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은 그 해에 지출을 마무리하고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근 4년간 화성시의 명시이월 예산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4. 최근4년간 명시이월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	94,582,334	90,863,733	98,403,128	82,888,821
일반회계	92,358,327	87,730,483	93,927,728	82,335,639
특별회계	2,224,007	3,133,250	4,475,400	553,182
증 감 액 (전년도대비)	6,642,192	△3,718,601	7,539,390	△15,514,307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은 기존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 여유자금 예탁 등을 계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변경 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2개 기금
- 이에 따라 현재 화성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총 15개로,
 - ▶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216억 원임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 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특별회계
 -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 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수 입 : 원안가결
- 지 출 : 원안가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내역 : 붙임 참조

[붙임]

2022. 12. 2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역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 : 원안가결

가. 세 입 : 원안가결

나. 세 출 : 원안가결

(단위 : 천원)

회계명	예산액	감 액	증 액	의결액	비고
합 계	3,821,282,386	-	-	3,821,282,386	
일 반 회 계	3,269,694,734	-	-	3,269,694,734	
특 별 회 계	551,587,652	-	-	551,587,652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내역 : 원안가결

가. 수 입 : 원안가결

나. 지 출 : 원안가결